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8. 10. 8.(월) / 총 11매(본문 2, 붙임 9)
담당 부서	항공산업과	담당자 • 과장 김도곤, 사무관 노지훈 • ☎ (044)201-4219, 4223
보 도 일 시	2018년 10월 8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8(월) 12:00 이후 보도 가능	

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 발표

- 10월중 면허신청 접수, 11월부터 면허심사 착수 -
 - 2년내 운항개시 조건부 면허발급으로 사업계획의 실행력 제고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공정하고 투명한 면허심사와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「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」을 발표하였음.

《 면허심사 기본방향 및 절차 》

-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(자본금·항공기) 구비여부를 심사하고,
-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, 국토부 내 T/F*에서 안전·노선확보 가능성·공항 수용능력·소비자편익 등을 검토함
- * 안전, 소비자, 공항인프라 등 분야로 항공정책실 내 담당과 7개 참여
- 특히,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(교통研)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, 소비자 편익,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할 계획임.
- 또한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, 면허자문회의*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고,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.

* 민간위원: 안전·경영·법률·회계 전문가 7인을 추천 선정 / 정부위원: 5인

- 면허 발급시에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·노선허가를 2년 내에 취득하는 조건*을 부과하여(항공사업법 제26조),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함.

*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운항증명(AOC) 취득, 총 2년 내에 노선허가 취득 및 부정기를 포함한 노선의 운항 개시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면허 실효

- 아울러, 면허발급 후에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 조건·사업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하여,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허를 관리해 나갈 예정임.

《 향후일정 》

-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면허기준 개정(항공사업법 시행령·시행규칙)이 완료되는 즉시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할 예정(10월 중)이며, 올 11월부터는 면허심사에 착수할 계획임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에 발표한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 신청 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며,
 - 특히, 안전성,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건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토록 함으로써,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,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”을 밝혔음.

※ (붙임)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 1부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, 항공산업과 노지훈 사무관(☎ 044-201-422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>

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계획

2018. 10.

항 공 정 책 실
항 공 산 업 과

1 면허기준 구체화

- 신청자가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면허 기준별로 심사항목·방법을 미리 제시하여, 심사내용의 투명성을 제고

2 전문기관 사전검토

- 국책연구기관(교통研)이 전문적으로 검토·분석*하여, 심사내용의 타당성도 강화

* 사업계획서 상 수요예측의 타당성, 예상 영업이익률의 타당성 평가 등

3 부 내 면허심사 T/F 운영

- 국토교통부 내에 면허심사 T/F*를 구성·운영하여, 소비자·안전·공항인프라 등을 다각적으로 종합 검토

* (면허·노선·소비자) 항공정책과, 항공산업과, 국제항공과
(항공안전) 안전정책과, 항공운항과, 항공기술과 / (공항인프라) 공항정책과

4 충실한 절차이행

- 의견청취, 면허자문회의 등 법정절차를 충실·공정하게 이행하고, 군 공항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 등과도 충실히 협의

5 면허발급시 실행력 제고

-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·노선허가를 일정기간 내에 취득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여,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 확보

6 철저한 사후관리

- 면허발급 후에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조건·사업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

- 이를 통해, 사업자가 건실성을 지속 유지하며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, 소비자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

II

면허심사 절차



① (면허신청) 신청자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

-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토교통부는 신청자에 보완기회 부여 (10일 내외), 신청자는 필요시 보완기간 연장 요청 가능(2회까지)

* 면허신청의 처리기한은 90일(25일에서 제도개선 중)이며, 심사 중에 의견청취 기간(10일)과 문서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불산입

- ② (결격사유·물적요건 심사) 국토교통부가 면허 결격사유와 면허 물적요건(자본금·항공기)을 종합심사에 앞서 평가
- 결격사유·물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1차례 보완기회를 부여하고,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 처분
- ③ (종합심사) 결격사유·물적요건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대상으로, 개별요건별 심사와 의견청취, 면허자문회의 등 관련절차를 추진
- (개별요건 심사)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부내 T/F에서 안전·공항·노선·소비자편익·피해구제 등 분야별로 검토
 - 국책연구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신청자의 수요확보 가능성, 소비자 편익, 재무상황 예측 등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
 - * 일부 내용적으로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기회 제공
 - (의견청취) 신청자의 운항계획·항공기 도입계획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(10일) → 신청자에게 소명기회 부여
 - (면허자문회의) 국토교통부·전문기관의 검토, 관계기관·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 등을 종합 → 발급여부에 대한 최종 자문
 - * 민간위원: 안전·경영·법률·회계 전문가 7인을 추천 선정 / 정부위원: 5인
- ④ (발급여부 결정) 세부기준 검토 및 의견수렴 결과,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의견 등을 종합하여 면허 발급여부 결정
-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, 운항증명·노선허가를 일정기간 내에 취득하는 조건으로 면허발급 (항공사업법 제26조)
 - * 면허발급 후 1년 내 운항증명, 2년 내 노선허가 취득·취항부정기 포함을 조건으로 설정
- ⑤ (사후관리) 사업계획서·면허조건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,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, 면허취소·정지 등 엄격 조치

1. 결격사유·물적요건 심사

- (결격사유 해당여부) 대표·임원이 외국인, 외국인 지분 1/2 이상 또는 관련법률 위반·면허취소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결격(항공사업법 제9조)
 - 국토교통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서류를 관계 기관에 조회하여 진위여부 확인
- (물적요건 구비여부) 다른 면허요건에 비하여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한 자본금·항공기 보유계획 수는 미달여부를 즉시 확인
 - (자본금) 국제여객 신청자는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, 국내여객 및 화물 신청자는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인지를 확인
 - * 투자자로부터의 향후 자금조달은 자본금 요건 평가 시에는 고려하지 않음 (예: 면허조건부 투자의향이 담긴 협약서, LOI 등)
 - (항공기 보유계획) 면허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항공기 보유 요건 (5대)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보절차의 진행도, 구체성 등으로 평가
 - 항공기의 구매·리스계약 여부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, 사업계획서 상의 항공기 도입계획을 평가
 -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연차별로 도입될 항공기 수, 도입방법 (구매·리스 여부, 기종, 판매·리스사와 협의 결과나 의향서 등)을 제시

<면허기준 중 물적요건 (항공사업법 시행령)>

자본금	항공기
150억원 이상	5대 이상 (3대 이상에서 제도개선 중)

* 국내여객 및 화물면허는 자본금 50억원, 항공기 대수 1대

** 이 외 비행기 성능(계기비행능력, 쌍발 이상 등), 좌석(51석 이상) 충족 필요

2. 종합 심사

<분야별 세부 심사시 심사항목>

대분류	증분류	평가취지
사업계획 적정성	노선확보 가능성	· 공항 인프라 및 운수권을 고려한 노선확보 가능성
	수요확보 가능성	·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수요실현의 가능성
재무능력	사업초기 재무능력	· 사업초기 영업적자 극복능력
	영업이익률 현실성	· 영업흑자 전환 가능성
항공안전		· 정비·조종 등 적정인력 및 관련규정 등을 통한 안전확보
이용자 편의	소비자 편의	· 선택의 다양성, 가격 경쟁력
	소비자 보호	· 사고발생시 여객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 · 교통약자 보호를 통한 공공성 확보

가. 사업계획의 적정성

① 노선확보 가능성

-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하는 노선의 **공항 인프라** 현황을 확인하고 (국내 취항공항과 상대 공항도 종합검토), **수용가능성**을 심사
 - 공항별 **슬롯 포화도** 등을 고려하여, 사업계획서 상의 **운항횟수의 적정성도** 검토
- **노선허가 등 관련부서**(국제항공과: 노선허가, 지방항공청: 관할공항 슬롯)
 - 타 기관(국방부의 청주·김해공항 등 슬롯 관련)간 **상호검토** 추진

② 수요확보 가능성

- 사업계획서가 제시하는 공급석·탑승률 기준에 따른 수요가 시장 상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 확보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
 - 국외 불확실성, 사회경제지표, 전환수요, 신규 유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분석하고, 법정 수요도 분석
 - * (국외 불확실성) 국제 정세변화(예: 중국 사드보복), 유가 등락 등 (사회경제지표) 영향권 내 인구·소득의 현 수준 및 변화 가능성 (법정수요)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공항 여객수요
-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운항노선의 경쟁도를 감안하여, 신청자의 가격 등 경쟁력을 검토

나. 재무능력

① 사업초기 재무능력

- 사업계획서 상 투자자의 장래투자 계획이 이행 가능한지를 검토
-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간(2년에서 제도개선 중) 운영비 등의 비용 충당 가능성을 심사, 자본잠식 가능성 및 잠식률 등을 예측
 - * 초기 자본금·장래투자 계획과 '영업이익률 현실성'에서 도출된 사업초기 예상 영업이익을 활용
-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개월 간 영업수입 없이 비용충당 가능성 검토

② 영업이익률 현실성

- '수요확보 가능성'에서 분석한 예상수요에 따라 매출액, 매출원가, 일반관리비의 변화수준(민감도)과 영업이익을 분석
 - 도출된 영업이익에서 흑자전환 시점을 예측하고, 사업계획서 상 제안된 예측치와도 비교
- 타 항공사와 차별화된 수익모델을 통하여 수요를 창출하고, 이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

다. 항공안전

- “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”(16.4월) 일환으로, 항공기 도입계획에 상응하는 안전조직 확보계획 적정성과 이행가능성을 심사
 - 항공기 1대당 조종사·정비사·운항관리사·승무원 수의 적정수준 충족여부와 도입할 항공기의 기령 등도 검토
 - 운항증명 단계 검토항목에 준하여, 조직·인력 구성·업무분장, 종사자 훈련계획, 교범, 비상절차, 정비규정 등의 준비수준 확인

라. 이용자 편의

① 소비자 편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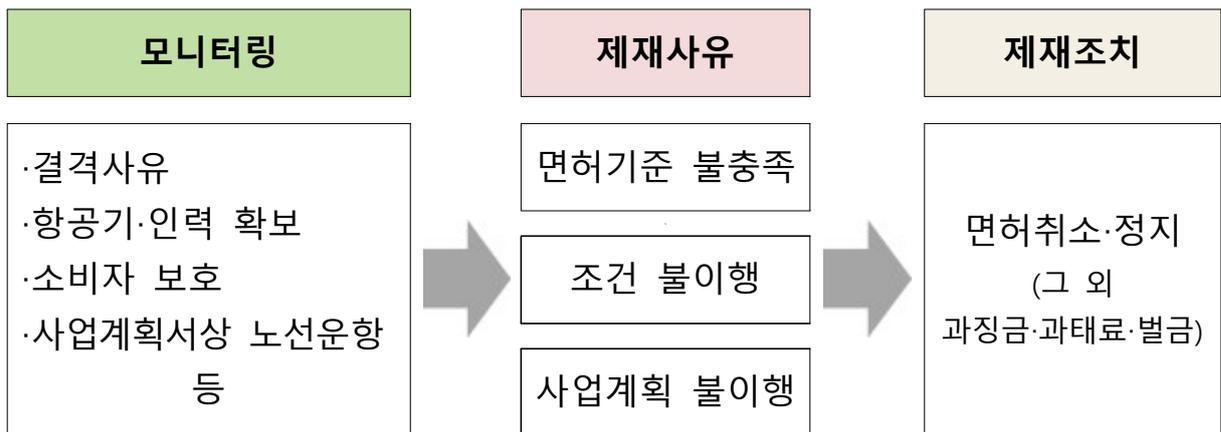
- 차별화된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
 - * 새로운 출발지-도착지 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 여부 등
- 수요 확보에 따른 영향권 내의 경제적 효과,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수준 등을 검토

② 소비자 보호

- 운항지연·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구제계획 수립여부와 이행가능성을 심사하고,
 - 항공사 대상 「항공교통서비스 평가」(법정평가)의 심사항목인 서비스의 정시성·편의성·안전성, 보호조치의 충실성 측면에서 평가
- 교통약자(장애인·고령자·임산부·영유아 동반자 등)의 이용편의를 위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 수립여부와 이행가능성을 심사

3. 사후 관리

- (면허기준 충족)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면허발급 이후에도 기준 충족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(항공사업법 제8조제2항),
 - 면허발급 후에도 자본금, 안전, 재무능력 등 면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, 면허취소·정지 (항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3호)
- (조건이행) 운항증명(AOC)·노선허가 취득 조건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하여, 불이행 시에는 면허취소·정지 (항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14호)
- (사업계획 이행)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확보, 소비자 보호 등도 중대한 불이행시 면허취소·정지 (항공사업법제1항제5호)



IV

향후일정

- '18.10월 초: 신규면허 신청의향자에 면허신청 준비 통보
- '18.10월 중: 「항공사업법」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
완료 직후 면허신청 및 접수
- '18.11월 ~: 면허심사 착수 → '19.1분기까지 심사 완료